45. 건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성별	남성	나이	만 66세	직종	건설업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년간 여러 가정집 및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 직으로 설치된 가구 등 하자보수, 문틀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7년 10월 12일, 단추 잠그기, 신발끈 묶기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좌측 상하지 근력 감소로 인하여 대학 병원 신경과 진료 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으며, 순간접착제, 유성본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공고에서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1985년 부터 1988년까지 자동차 공업사에서 오일교환 및 정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악세사리를 판매하였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통업(마트)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확보할 수 없어 근로자 측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작업공정 및 내용에 대하여 파악이 불가하였다.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3년간 여러 가정집 및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설치된 가구 등 하자보수, 문틀제작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등 증빙자료는 확보 할 수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업무일지와 자녀 통장으로 받은 급여내역, 근로자 측 진술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근로자는 2006년부터 여러 가정집 및 아파트 현장 내 가구 등 하자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아파트 세대 내 설치된 가구의 흠집, 오염 제거, 수평 수직 조절 등 하자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5시까지 원칙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공휴일에 간협적으로 근무하였다.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내원 약 1년 전부터 단추를 잠그거나 신발끈을 묶는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점점 좌측 팔, 다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2017년 10월 12일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내원하였다. brain MRI 시행 결과 정상소견 확인되었고, F-18 FPCIT, brain-PET/CT 시행 결과, 우측 기저 핵(right basal ganglia)부위의 도파민 수용체(DAT) 결합(binding)이 감소해있는 것이 확인되어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도파민제제(Levodopa)를 포함하여 약물치료하며 증상 조절하였고, 2021년 1월 31일,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무수축 리듬(asystole)에 의한 심정지(cardiac arrest)로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음주력은 발병 전까지 주1회, 소주1병이었으며, 흡연력은 하루 0.5갑, 약 20년이었다. 그 외 상병과 관련한 파킨슨병을 포함한신경계질환의 가족력은 없었다.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복용 중에 있고,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대사성질환, 및 두부 손상 병력은 없었으나,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1년 전에 뇌경색을 진단받은 적 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〇〇〇(남, 1952년생)는 만 66세인 2017년 10월 12일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 자는 2006년부터 가정집 및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및 문틀 제작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11년 동안 종사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들로 농약,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중독, 망간, 납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보고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유기용제 노출이 동반된 경우였다. 근로자가 11년 동안 하자보수 및 문틀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의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